## 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[별표 4]

## 연구개발성과의 등록·기탁 대상 및 범위(제33조제4항 관련)

구분	대상	범위
1. 등록	가. 논문	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(대회)지에 수록된
		학술논문(전자원문을 포함한다)
	나. 특허	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
	다. 보고서원문	연구개발 연차보고서,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
	라. 연구시설・	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(부가
	장비	가치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)의 연구시설ㆍ장비 또
		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・장비
	마. 기술요약정	연차보고,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
	보	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
	바. 생명자원	서열・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, 서열・구조・상호작용
	중 생명정보	등 단백체정보, 유전자(DNA)칩·단백질칩 등 발현체
		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
	사. 소프트웨어	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
	아. 표준	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, 국제표준
		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[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
		공식 국제표준화기구(ISO, IEC, ITU)가 공인한 단체
		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]
2. 기탁	가. 생명자원	세균, 곰팡이,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, 인간 또는 동물
	중 생물자원	의 세포·수정란 등 동물자원, 식물세포·종자 등 식물
		자원, DNA, RNA,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
		의 생물자원
	나. 화합물	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
	다. 신품종	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
		종 및 관련 정보